

위장 전입 건설업체 퇴출

도 내년 1월1일부터 폐이퍼컴퍼니 실태 조사
부실시공·임금체불 등 각종 부작용 방지 나서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폐이퍼컴퍼니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도는 건설업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위장전입 건설업체인 폐이퍼컴퍼니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년 1월1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물량 확보와 각종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위장전입 업체 퇴출이 시급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건설

업 자본금 위주 조사에서 폐이퍼컴퍼니를 숙여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폐이퍼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도내에 건설업 등록한 한 업체로 지역 물량을 따내면 하도급을 주고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아 부실시공, 임금체불, 지위남용 등 부작용을 초래하

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범위는 사무실, 자본금, 기술자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며 종합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원식 도 건설교통국장은 “폐이

퍼컴퍼니 조사를 통해 지역 건설업계 수주 질서를 바로 잡겠다”면서 “향후에는 전문건설업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올림픽 경기장 너머로 지는 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9일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 건설현장에서 며칠 남지 않은 올미년의 해가 지고 있다. 강릉에 건설되는 빙상경기장 5개를 비롯해 12개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평균 공정률은 47.8%다. 강릉=권태명기자

개최지도 쓰지 못하는 ‘올림픽’ 명칭

도가 새해를 앞두고 2018평창동계 올림픽 붐업(Boom Up)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올림픽’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불가관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도는 ‘올림픽’ 명칭 없는 올림픽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장 내년 2월 동계올림픽 G-2년을

평창조직위 “IOC 상표권 침해”
도 올림픽 사용 불가 관정 받아
새해 ‘올림픽 붐업’ 추진 난관
기념해 범국민 참여 열기 확산을 목표로 준비 중인 ‘올림픽 페스티벌’이 타격을 받게 됐다. 도는 테스트이벤트 기간 중 18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올림픽 페스티벌’을 통해 올림픽 붐 확산의 일대 전환기로 삼겠다는 전략이었다.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도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지만 기대만큼 분위기가 오르지 않아 걱정이 태산인 도 입장에서도 이 같은 결정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올림픽은 물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오륜’ 등의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행사의 성격이 모호하게 된 것은 물론 기대하는 효과도 얻기 어려워졌다. 도는 비영리행사이고 개최지가 주최하는 이벤트인 만큼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와 IOC 사이에서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조직위가 개

최지역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IOC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는 이유다. 실제 도청 안팎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대신 차라리 ‘국제 겨울 운동회’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국내 상황을 감안해서 IOC를 설득하는 것도 조직위의 역할 중 하나인데 아쉬움이 크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철새 건설업체 집중 단속

도 내년 1월 실태조사

속보=철새업체로 인해 강원도내 건설업체의 피해가 발생(본지 12월 16일자 6면)하자 강원도가 강도높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장전입 건설업체 일명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위장전입 건설업체는 서류상으로만 도내에 건설업을 등록하고 건설공사를 수주할 경우 타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나 공사관련 체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본인 회사가 실제 속해 있는 타사·도 건설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하도급하기도 해 지역경제 활

성화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무실, 자본금, 기술자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건설업종합정보망의 자료를 활용해 선정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도 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위장전입 의심업체 신고전화(033-249-2818)를 개설해 도민들의 신고를 접수받는다.

강원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질서를 바로잡아 선량한 도내 건설업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

종합심사낙찰제, 2년만에 기반조성 완료... 내년 전면 시행

年 12조 최저가 공사, 중심제 전환

〈2014년 기준〉

내년부터 국내 건설시장의 대표적인 병폐로 꼽혔던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지고 가격,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고루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으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연간 12조~14조원 규모의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 최저가낙찰제 적용에 따른 덤핑 낙찰과 잦은 계약 변경, 부실 시공, 저가 하도급, 임금 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계약법령 개정안 의결 생애주기 재정 효율성 제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공사 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종합심사낙찰제가 제도적인 기반을 갖춘 것은 2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2014년 4개 기관·18개 사업, 올해 7개 기관·27개 사업 등 2년간 총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최근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고 평가항목별 세

부 기준을 담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했다.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들은 전부 종합심사낙찰제로 바뀌게 된다.

지난 2014년 기준 최저가낙찰제는 총 145건, 12조3474억원 규모의 공사에 적용됐다. 이는 전체 공공건설 시장의 34.1% 수준으로 적격심사낙찰제(4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생애주기 측면에서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건설산업의 생태계 개선은 물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공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 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지속 보완하고 용역 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확대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최저가낙찰제와 무엇이 다른가

입찰자 평균가격 미만엔 점진적 감점... 덤핑수주 방지

고용·안전·공정거래 등 반영

내년에 전면 실시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와 낙찰자 선정에 위한 틀이 다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는 달리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심사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배점상 50~60점을 차지하는 가격 분야는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 평균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감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단가심사와 하도급심사 결과에 따라 가격점수에 감점이 주어지는데, 세부공종 단가를 기준단가와 비교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감점을 받게 된다.

또 개별 하도급계약 대금이 예정가격의 60% 이상이고 입찰금액의 82% 이상인지를 점검해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도 점

수가 깎인다.

공사수행능력 분야(40~50점)는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핵심공법, 구조, 규모 등 시공실적을 평가해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하고 준공 후에는 시공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음 입찰 때 반영한다.

다만 과거 실적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시공인력 보유로 대체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숙련기술자 배치를 통한 책임시공과 품질 확보를 위해 배치기술자 평가를 실시하고 동일공종그룹 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해 전문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가점(1점)으로 주어지는 사회적책임 분야는 건설인력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등이 주된 평가항목이다.

건설현장 고용 개선을 위해 국내 건설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및 임금 적시 지급 여부를 평가하고 원·하도급 간 동반성장을 위해선 상호협력평가 점수와 공정거래법 준수도를 반영한다.

건설안전과 지역경제 기여도 측면에서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비율과 지역업체 참여도를 각각 평가한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시장에 정착해 기록하게 되면 발주기관과 하도급·노무자는 물론 건설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발주기관은 입찰자 평가 때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평가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재정투입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측면에서는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 측면에서도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기술자 배치계획, 시공계획 등 입찰 때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와 시공평가를 다음 입찰 때 다시 반영함으로써 환류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하도급 업체와 노무자에 대한 적정공사비 전달로 건설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건설업계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에 따른 인력기술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남기자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때 적격공사 수주 못한다

내년부터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술자 보유기준(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적정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로, 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불법업체의 낙찰을 방지하고 적정 기술인력 보유를 통한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공사입찰특별요시서' 등으로 앞서 개정된 상위 법령(계약예규)에 따른 후속조치도 포함돼 있으며,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본격 적용된다.

개정 기준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기술자 보유현황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면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처리 하기로 했다.

중전까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는 방식을 적용했으나 내년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기준 감점 방식 적용서

'수행능력 결격' 처리 전환

"부실업체 퇴출 위한 조치"



부터는 수행능력 결격으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이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 상 퇴사일 기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절차도 크게 강화된다.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

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해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부실한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는 동시에 시공품질을 제고하고 기술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여건을 마련키 위한 조치로, 개정 기준이 시행되면 공공입찰시장의 건전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조달청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공사입찰특별요시서도 개정, 입찰참가자격 유지조건을 변경했다.

이는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전 계약예규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으나 내년

부터는 입찰서 제출일까지만 유지하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해,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동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과 더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부터도 신용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봉승권기자 skbond@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인허가 부문 경쟁력 키워야"

우리나라 건축 인허가 국제경쟁력이 타 분야에 비해 한참이나 뒤떨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는 189개 국가 중 4위인데도 건축 인허가 부문 경쟁력은 28위로 나타났다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과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주요 원인으로 △높은 건축 인허가 비용 △낮은 건축 품질안전관리지수 등을 꼽았다.

건축 인허가 비용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민간 감리사 고용비와 건축물 등

기 절차 중의 취득세 때문이며, 건축품질안전관리지수가 낮은 이유는 건축 인허가 주체의 전문성 부족과 자격요건 미흡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건축 전문 공무원 채용 확대와 지역건축센터 설립, 건축지도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대익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급리인상, 저유가 지속, 신흥국 성장 둔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 인허가 부문의 제도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연구를 관련 부처와 협력해 추진함으로써 국내 기업환경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기자 hyun@



공사 일시중단 중 잔여공사금액 이자청구·감액 가능한가

최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공사대금 청구소송 및 중재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바, 실무상 자주 문제되고 있는 일시정지기간 중 금융손실비용인 잔여공사금액에 대한 이자 청구 및 감액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2월경 A시(피고)와 사이에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공사기간 2008. 12. 26.부터 2010. 12. 25.까지로 정한 장기계속공사, 설계·시공 분리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3차분 공사 진행 중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이 사건 3차분 공사수행에 필요한 공사용지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공사착수가 불가하고, 가압장 위치변경 및 □□ 행사 개최'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정지된 기간의 이자를 산정하여 간접비와 함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일시 정지기간 중, 원고가 변경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 간접비 및 금융손해 산정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책임감리원의 하자보수공사 요청을 받고 하자보수를 한 기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설계·시공 분리방식에 의한 계약으로, 기본 설계도서 및 변경 설계도서 작성의무는 피고 또는 책임감리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책임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변경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정이 있더라도 변경 설계서를 제출한 시기는 이미 3차분 공사가 일시 정지된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변경 설계서 제출시기와 이 사건 3차분 공사의 정지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공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지되었더

라도 원고가 공사정지 중에 하자를 보수한 기간은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가 정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기간을 원고의 금융손해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합당하므로, 감정인이 하자보수를 한 기간으로 산정한 기간은 원고의 공사정지에 대한 금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6. 11. 선고 2013가합12021 판결, 항소심 계속 중).

그리고 최근 착공 전에 공사가 정지된 사건에서는, 공사정지 당시 인력이나 장비, 자재의 투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손해의 규모가 훨씬 작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수 차례 변경되어 증액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연배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69934 판결, 항소심 계속 중).

즉, 법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명시적인 공사정지조치가 선행되고, 그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잔여공사금액에 대한 이자 청구를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의할 점은, 법원이 공사정지에 대한 금융손해는 공사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연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사정지 현장에서는 최근 판결 선례 및 상급심의 판결들을 예의 주시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분쟁 단계를 대비하여 현장단계에서부터 계약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올촌 변호사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철근가격 협상, 결국 해 넘기나?

〈2016년 1분기〉

건설사 “하락 요인 충분…4만5000원 이상 내려야”
 제강사 “인하엔 동의하지만 건설업계 요구 지나쳐”

내년 1분기 철근값 협상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사자재구매담당자, 모임인 건자회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제강사대표들은 28일 첫 1분기 철근값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인하 쪽을 두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건자회는 물론이고 제강사 측에서도 내년 1분기 철근가격을 인하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얼만큼 인하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2014년 1분기부터 분기별 선 가격 협상 후 공급 체제가 자리잡은 후 기준 가격 인하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올 2분기였다. 올 2분기 기준가격은 t당 60만원으로 1분기 기준가격(64만5000원) 보다 4만5000원이 인하됐었다.

협상 규정상 건자회와 제강사 측은 정확한 요구 가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건자회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인하폭인 4만5000원보다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강사 측은 건자회가 요구하는 인하폭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며 인하폭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낙폭 최소화 절실한 제강사

제강사 측은 1분기 철근값 인하 폭을 최소화해야만 내년 연중 이어질 철근값 협상에서 누적 낙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할 수밖에 없다. 분기별 가격 결정 체제를 실시한 이후 누적 낙폭은 14만원으로 가격이 인상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올해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제강사들도 수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실제로는 봉형강 매출은 줄고 철스크랩 등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 영업이익이

다소 증가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냈다.

현대제철은 3분기까지 3조4948억원의 봉형강 매출을 올려 작년 같은 기간(3조3762억원)보다 소폭 늘었지만 고부가가치 판매 증가, 강관 및 경량화 부문이 포함돼 표면상 증가했을 뿐이다.

동국제강의 경우 작년 3분기까지 1조7488억원의 봉형강 매출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1조5795억원을 기록하며 주택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지난 4분기 기준 가격도 3분기보다 1만5000원 인하한 58만5000원에 결정된 바 있어 2015년 연간 실적은 작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철근값 낙폭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1분기 철근값 하락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중 철근 유통 가격과 기준가격의 격차가 크고 국내산 철스크랩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다. 또 국제적으로는 공급과잉 탓에 철근 값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유독 국내 건설용 철근의 기준 가격만 흐름을 달리고 있다는 것도 가격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시중 철근 유통가격은 t당 49만~50만원(즉시 현금가 기준) 정도로 추정된다. 4분기 기준가격보다 최고 9만5000원가량 저렴하다.

국내산 철스크랩 평균 시세는 t당 15만6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11월 초 대비 3만5000원이 하락했고 작년 말과 비교하면 5만7000원이나 하락한 상황이다. 이는 제강사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철스크랩 구매가격을 계속 인하해 온 결과다.

분기별 철근 기준가격 추이
 단위 : SD400, 10mm 기준 t당 가격 (원)

2014년 1분기	72만5000
2014년 2분기	71만
2014년 3분기	68만5000
2014년 4분기	68만
2015년 1분기	64만5000
2015년 2분기	60만
2015년 3분기	60만
2015년 4분기	58만5000
2016년 1분기	?

제강사들의 원재료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입산 철스크랩 가격도 t당 219달러로 국내산(129달러)보다 높지만 작년 말(305달러)과 비교하면 30% 정도 하락했다. 국제 수급 상황에 따른 가격 하락 정도가 국내 상황보다 더 심하다는 것도 건자회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할인 근거다.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라 세계 각국의 철근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국내 기준가격 대비 10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한편 건자회와 제강사 측은 30일 다시 만나 2차 협상을 갖기로 했지만 인하 폭에 대한 입장차가 커 연내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전망이다.

문수아기자 moon@